「2026년 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 통합 시행 공고

원전 핵심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원전 안전·품질 기반 강화 및 산업 생태계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2026년 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의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

<목 차>

1. 사업개요 ····· 1

2. 지원대상 ····· 1

3. 지원규모 ····· 2

4. 신청방법 ····· 2

5. 사업 설명 및 안내 ····· 2

6.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2

7. 유의사항 ····· 7

8. 사업별 문의처 ····· 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원전기업 경쟁력 강화, 원자력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원전 생태계의 지속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내 원전의 **안전한 건설·운영**을 뒷받침하고 **수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산소진시)

○ 공모 신청하는 각 사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의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참여기업 :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 지원기준 :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① 최근 5년 이내 원전 분야 매출 또는 기술개발 참여실적 보유 기업

② 국내외 원자력 인증보유(KEPIC, ASME 등) 기업

③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 또는 희망 기업(심사를 통해 적격여부 판단)

· (중소·중견기업 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매출 기준)

원자력발전사업자, 주기기공급사, 연구개발·설계·정비·연료·폐기물 등 원전 전주기 설비 관련 실적에 한함(사무용품, 중계대리점, 청소, 보안 등 단순 서비스 용역 실적은 제외)

·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기업 기준)

現 원자력 매출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분야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원자력 분야 기술이전 기업, 관련 기술 및 활용 계획이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 원자력 관련 협회의 회원사, 방사선 등 비발전 분야 기업/기관, 원자력 관련 특허 보유기업/기관 등

※ 참여 희망기업은 사업별 특수요건 확인 필요

□ 참여인력

원전 중소·중견기업 신입·재직자, 잠재 근무가능자(원자력 관련 전공생 및 구직자) 등

3 지원규모

□ 정부지원금 : 총 7,988백만원

구분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비
1	원자력 핵심기업 육성	6,360백만원
2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1,582백만원
3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46백만원
총 계		7,988백만원

4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개별 신청

5 사업 설명 및 안내

□ 지원사업의 상세 사업내용과 안내자료는 홈페이지(kaif.or.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6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사업지원 규모 및 지원절차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와 문의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원자력 핵심기업 육성

□ 사업내용

○ **(원전 공급망 강화 지원)** 원전 안전성·품질과 직결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 지원 및 공급기업 다변화를 위한 기업자금 지원

○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지원)**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해외사업 동반진출 및 독자수출 역량 강화 자금 지원

□ 지원내용

<table>
<tr><th>구 분</th><th>지 원 내 용</th></tr>
<tr><td>핵 심
부 품
국산화
·
공 급
기 업
다변화</td><td>
□ (국산화) 해외의존도가 높거나 단종되어 공급 리스크가 높은 주요 부품 국산화를 위한 인증, 컨설팅, 시험 등 자금 지원

□ (다변화) 한수원 품질등급(Q, A) 품목을 신규 개발·생산·공급하는 기업의 유자격 신규·갱신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 시제품 제작 등 자금 지원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지원금액</th></tr>
<tr><td>인증취득 비용</td><td>컨설팅, 공인검사, 시험 및 시험용 목업제작 등</td><td>5,000만원</td></tr>
<tr><td>공정개선·
시제품 제작</td><td>관련 공정변경 및 개선, 시제품의 설계·제작 등</td><td>5,000만원</td></tr>
<tr><td>장비개선·수리</td><td>장비개선 및 수리, 검교정 등 장비관련 지원</td><td>3,000만원</td></tr>
<tr><td>지식재산권</td><td>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취급 컨설팅 등</td><td>2,000만원</td></tr>
<tr><td>역량개발</td><td>관련 교육, 세미나 참석, AI프로그램 사용료 등</td><td>2,000만원</td></tr>
<tr><td>시장조사</td><td>개발품 관련 국내·외 기술분야 시장조사 및 분석</td><td>3,000만원</td></tr>
<tr><td>홍보</td><td>제품·기술과 관련된 리플릿,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td><td>2,000만원</td></tr>
<tr><td>디자인개선</td><td>개발품 관련 제품·기술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td><td>2,000만원</td></tr>
<tr><td>전시참여</td><td>개발품 관련 국내·외 전시부스 임차·설치, 비품임차, 참가비, 장치 설치비 등</td><td>2,000만원</td></tr>
<tr><td>기술모형 제작</td><td>기업 제품·기술 홍보를 위한 핵심제품 모형제작</td><td>2,000만원</td></tr>
<tr><td>기타</td><td>기타 국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td><td>2,000만원</td></tr>
</table>
<table>
<tr><th>기업당 최대 지원금액</th><th>정부지원금 비중</th><th>기업부담금 비중</th></tr>
<tr><td rowspan="2">건별 합산 8,000만원 이내</td><td>중소기업 80%</td><td>중소기업 20%</td></tr>
<tr><td>중견기업 60%</td><td>중견기업 40%</td></tr>
</table>
※ "지원금액"은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업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참여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 해야하는 금액임

※ 참여기업은 핵심부품 국산화, 공급기업 다변화 중 1개의 사업만 참여 가능함
</td></tr>
<tr><td>동 반
진 출
·
독 자
수 출</td><td>
□ (동반진출) 중소·중견기업이 국내 대기업 및 공기업이 수주한 해외사업에 동반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취득, 입찰, 판로개척 등 자금 지원

□ (독자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체코·UAE·이집트 등 유망시장에 진출·독자수출하기 위한 전략컨설팅, 마케팅, 해외지사 설립 자금 지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지원항목</th><th colspan="2">지원한도</th></tr>
<tr><th>동반진출</th><th>독자수출</th></tr>
<tr><td>현지법인
설립</td><td>법인 설립을 위한 물류운송, 인증 및 수입통관, 사무공간 임차, 현지인력 채용, 회계·세무·법률, 통번역, 컨설팅 등 현지 법인 설립·운영비 지원</td><td>8,000만원</td><td>2억원</td></tr>
<tr><td>기술인증
취득</td><td>원자력 관련 해외 기술기준 및 품질인증(ASME, IEEE, ISO 19443 등) 취득, 특허출원 및 트랙 레코드 확보를 위한 국내 실증비용 등 지원</td><td>8,000만원</td><td>1.5억원</td></tr>
<tr><td>매출증대
활동</td><td>원전분야 해외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 인사 초청 등 수주활동, 해외 진출국가의 규제 대응 등 수출대응 전략 컨설팅 등 지원</td><td>8,000만원</td><td>1억원</td></tr>
</table>
</td></tr>
</table>

입찰 참여	해외원전 사업 발주처 등록 및 입찰참여 준비 비용 등 지원	8,000만원	1억원
수출 마케팅	현지 자체 기술세미나 개최, 홍보자료 제작, 전문 기술문서 및 기업 소개자료 번역비, 비즈니스 미팅 통역비 등 지원	6,000만원	6,000만원
해외 법률·세무	국외 진출 관련 분쟁 발생 등에 따른 지식재산권, 기술보호· 유출관련 자문, 국외 소비자 및 기업정보 보호에 따른 법률 검토 등 법률/세무 자문 비용 지원	3,000만원	3,000만원
시장조사	해외시장/제품 조사·분석·컨설팅, 전시·박람회 참가 등 지원	3,000만원	3,000만원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	정부지원금 비중	기업부담금 비중
건별 합산 8,000만원 이내	중소기업 80%	중소기업 20%
(독자수출, 2년간 2억원 이내)	중견기업 60%	중견기업 40%

※ 지원금액은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업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참여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임.

※ 참여기업은 동반진출, 독자수출 중 한 개의 사업만 참여 가능함

□ 지원대상

○ 공통요건 및 특수요건 각 1개 이상 충족 기업

○ 공통요건 : 동 공고 1페이지 “2. 지원대상-참여기업” 참조

○ 특수요건

▪ **(핵심부품 국산화)**

① 국산화·단종품 개발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개발 실적**을 보유한 기업

* 국산화·단종 관련한 원자력 품질등급(Q,A) 품목 개발을 목적으로 지원받은 정부·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

** 개발선정품, 국산화 프로그램, R&D 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이력 보유(단, 종료된 프로그램의 경우, 평가결과 ‘우수’, ‘양호’ 등에 준하는 결과의 경우 지원)

② 한수원 원자력 품질등급(Q, A) 품목 중 국산화·단종 대체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에 대한 공급 실적 또는 제작·공급 능력을 가진 기업**

* 단종 대체품목(Q, A) 별도 공지(한수원 제공)

** 사업계획서에 대한 지원 적정여부 평가(기술요건 충족, 제작·공급 및 현장적용 가능성 등)

※ ①,② 요건 중 ①에 해당하는 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함

▪ **(공급기업 다변화)** 한수원 유자격(Q·A등급) 신규 취득 또는 갱신 예정기업

□ 지원절차: 사업공고 → 기업 신청/접수 → 평가 및 참여기업 선정 → 협약체결 → 1차 교부금 지급(70%) → 사업수행 → 진도점검(사업별 상이) → 2차 교부금 지급(30%) → 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종료

□ 신청방법 : E-mail을 통한 신청접수(tech@kaif.or.kr)

Ⅱ.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 사업내용

○ **(원자력 아카데미)** 원전 산업계·학계의 전문인력,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원전 분야 취업희망자, 신규·재직 인력 등 대상별 맞춤형 이론·실습 교육 제공

○ **(채용 플랫폼)** 원전기업-인력 간 실시간 일자리 매칭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직자 맞춤형 취업 컨설팅 제공

□ 지원내용

○ **(원자력 아카데미 교육과정)**

구분	과정	분야	과정명	방법	시기	기간
1	일반 과정 (5)	원전산업	원전산업 일반 과정	이러닝	상설	7일
2		원전산업	원전기업 신입사원 입문 과정	집합	4·9월	3일
3		원전산업	AI를 활용한 원전산업 리더십 역량 강화 과정	집합	7·10월	2일
4		SMR	SMR 일반 과정	집합	5·11월	3일
5		원전해체	원전해체 일반 과정	이러닝	4·7월	7일
6	실무 과정 (4)	원전인력	원전 경험인력 리프레시 교육	집합	5·8·12월	3일
7		공급망	원전산업 진입 전략 과정	집합	6·9월	1일
8		공급망	원전기업 계약·조달 A to Z	집합	5·8월	1일
9		원전수출	원전기업 해외진출 전략 실무 과정	집합	9월	2일
10	심화 과정 (6)	원전수출	원전기업 해외진출 전략 심화 과정	집합	10월	2일
11		원전산업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전문가 아카데미	집합	추후확정	1일
12		SMR	SMR 심화 과정	집합	6·12월	2일
13		SMR	SMR 해외 비즈니스 개발 과정	집합	11월	5일
14		원전해체	원전해체 심화 과정	집합	5·9월	3일
15		원전해체	원전해체 해외 비즈니스 개발 과정	집합	6·10월	5-12일
16	전문 과정 (4)	전문기술	방사선 분야 다기능 안전관리자 양성 과정	융합	추후확정	210일
17		전문기술	원자력 프로젝트관리자 양성 과정	집합	추후확정	3일
18		전문기술	원자력 품질경영시스템 전문가 양성 과정	집합	추후확정	5-7일
19		전문기술	원전산업 현장 기능인력 양성 과정	집합	연내시행	과정별 상이

※ 교육명, 커리큘럼, 일정은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간 교육계획은 별도 공지 예정[2026. 3월 중/원산협회 홈페이지(kaif.or.kr) 및 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 홈페이지(nisp.kr)]

- 교육비는 교통비, 숙박비 등 교육과정 참석에 따른 소요비용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

* 해외 교육의 경우, 교육비 자부담율 50% 적용

- 교육 수료 인정

구 분	이러닝	집합교육
진도율(출석률)	99.9%	80%
수료시험	70%	70%

○ **(채용 플랫폼)** 상반기 내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업-인력 간 매칭 및 취업 컨설팅 지원

- 채용 플랫폼을 통한 기업·인력 채용 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 1:1 맞춤형 취업 컨설팅 제공

구분	청년·신입 인력	경력·재취업 인력
1	원전산업 및 직무 이해 컨설팅	경력분석/전직상담 및 매칭
2	진로설정 및 취업전략	경력기술서·이력서 고도화
3	취업 준비 및 스펙분석	재취업/전직 면접 컨설팅
4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기타 필요 컨설팅
5	면접 대비 컨설팅	
6	기타 필요 컨설팅	

□ 지원대상

○ 참여기업 : 동 공고 1페이지 “2. 지원대상 - 참여기업” 참조

○ 참여인력 : 동 공고 1페이지 “2. 지원대상 - 참여인력” 참조

□ 지원절차

○ **(원자력 아카데미)** 교육신청 → 교육신청서 검토 → (필요시) 선발위원회 개최 → 교육생 선발 → (필요시) 지원 수준 안내 → 교육 참석 확정

- 교육은 원자력 교육 시스템(edu.kaif.or.kr) 회원가입 후 신청 및 확인 가능

○ **(인력 플랫폼 및 취업 컨설팅)**

- 기업 채용·인력 취업 정보 등록 및 관리 → 취업컨설팅 신청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시행 및 결과 관리

* 인력 플랫폼 및 취업 컨설팅 상반기 내 구축 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원자력 아카데미 : edu.kaif.or.kr / 취업컨설팅 : nisp.kr)

Ⅲ.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 사업내용

○ **(선금 보증보험 지원)**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한수원, 두산E 등과 신한울 3·4호기 기자재(보조기기, 주기기) 공급계약 후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 수수료 50% 지원

* 기업에서 보증료 선(先) 납부, 보조금 후(後) 지원

□ 지원대상 : 신한울 3·4호기 기자재(보조기기, 주기기) 공급계약 후 선금 수령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기업 신청/접수 → 서류심사(적격심사) → 보조금 지급 → 기자재 계약·납품실적 등 점검 → 사업종료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신청접수 (deposit@kaif.or.kr)

7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 홈페이지(nisp.kr)*”, “원자력 교육 시스템(edu.kaif.or.kr)**”,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및 운영됨

* (지원사업 홈페이지) 사업 신청, 인력매칭, 평가 등
** (원자력 교육 시스템) 교육 신청 및 관리, 일정 확인 등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업비 교부, 사업비 집행, 정보공시 등

※ 내역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별 안내에 따라 운영

□ 사업참여기업은 본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함

□ **참여신청 시 사업별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명시한 관리지침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과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고 사전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 이후라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사업완료 후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사업비 정산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협약에 따라 진도점검 및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실적 점검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지식재산권 등의 유·무형적 결과물은 통상적으로 참여기업의 소유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국가 또는 주관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협약종료 후 사업 결과물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며,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참여기업은 수혜실적 및 성과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성과조사, 분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 참여기업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8 사업별 문의처

□ 원자력 핵심기업 육성

○ Tel : 02-6257-2596 / E-mail : tech@kaif.or.kr

□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 Tel : 02-6257-2594, 02-6953-2523 / E-mail(교육) : edu@kaif.or.kr

○ Tel : 02-6953-2518 / E-mail(교육) : career@kaif.or.kr,
E-mail(플랫폼) : job@kaif.or.kr

□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 Tel : 02-6953-2043 / E-mail : deposit@kaif.or.kr

◆ (참고) 홈페이지
- 「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 : www.nisp.kr(5월 이후)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 www.kaif.or.kr